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 2016. 8. 31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8일(목), 마포구청장

###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월)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부터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까지

### 5. 개정이유

- 동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표기 형식 및 관계 조문 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가. 법령 표기 형식 수정 (안 제7조제2항제10호)
  - 나. 관계 조문 수정 (안 제9조)
  - 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 (부칙)

## 6.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마포구 성산로 128번지(옛 구청사 부지)에 건립 중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추진 부서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이 한시기구로 2016. 12. 31.로 존속기한이 되어 있으나, 건물 준공은 2017. 8. 15. 예정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준공이후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전 준비 등을 위해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 6. 30. 까지 연장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명에 낫표(「 」)를 붙이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가. 안 제7조(도시환경국)제2항제10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규명에 「 」 기호를 삽입하고
  - 나. 안 제9조(설치) :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보건소의 설치 근거 법령을 옮바르게 수정함
  - 다.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구 분	변경내용(부칙 제2조)
당 초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변 경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는 2016. 8. 4 ~ 8.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나, 2015. 5. 20. “2014년 행정자치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지방재정 투자심사분석 의뢰” 결과 당초 사업기간이 2013. 4월 ~ 2016. 12월에서 2014. 4월 ~ 2017. 12월로 변경되었고, 또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물이 2017. 8. 15. 준공 예정으로 공사기간

연장 및 건물 준공이후 시설물 준비와 조직운영 등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동(同) 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4. 4. 1. ~ 2016. 12. 31.까지 => 2018. 6. 30. 까지 연장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7조(도시환경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목에 낫표(「 」)기호를 삽입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9조(설치)에서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보건소의 설치 근거 법령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자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총무과	1

( 2016. 8. 31 )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 전문위원 김 은 모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9일(금), 마포구청장

###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6년 8월 22일(월)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부터 제30조(정원의 규정)까지
- 「도서관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 5. 개정이유

- 동 조례안은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시설을 총괄 관리·운영할 시설장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가. 5급 정원을 59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계를 1,311명에서 1,310명으로 감원 (안 별표 3)
  - 나.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5급 1명의 한시정원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 (부칙)

## 6.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에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8. 6. 30.까지 연장함에 따라 2017. 8. 15.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준공 전 시설물 사전 준비 및 준공이후 시설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도서관장 겸임 시설장 5급 1명의 한시정원도 2018. 6. 30.로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중 5급을 59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6급 이하를 1,311명에서 1,310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중 5급 및 6급 이하 계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3]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u>						[별표3]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u>																																																																	
<table border="1"><thead><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 계</th><th>구본청</th><th>의 회 사무국</th><th>보건소</th><th>동</th></tr></thead><tbody><tr><td colspan="6">(생 략)</td></tr><tr><td>5급</td><td>59</td><td>34</td><td></td><td>9</td><td>16</td></tr><tr><td>6급 이하 계</td><td>1,311</td><td></td><td>1,311</td><td></td><td></td></tr><tr><td colspan="6">(생 략)</td></tr></tbody></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생 략)						5급	59	34		9	16	6급 이하 계	1,311		1,311			(생 략)						<table border="1"><thead><tr><th>기관별 직급별</th><th>총 계</th><th>구본청</th><th>의 회 사무국</th><th>보건소</th><th>동</th></tr></thead><tbody><tr><td colspan="6">(현행과 같음)</td></tr><tr><td>5급</td><td>60</td><td>35</td><td></td><td>9</td><td>16</td></tr><tr><td>6급 이하 계</td><td>1,310</td><td></td><td>1,310</td><td></td><td></td></tr><tr><td colspan="6">(현행과 같음)</td></tr></tbody></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현행과 같음)						5급	60	35		9	16	6급 이하 계	1,310		1,310			(현행과 같음)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생 략)																																																																							
5급	59	34		9	16																																																																		
6급 이하 계	1,311		1,311																																																																				
(생 략)																																																																							
기관별 직급별	총 계	구본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동																																																																		
(현행과 같음)																																																																							
5급	60	35		9	16																																																																		
6급 이하 계	1,310		1,310																																																																				
(현행과 같음)																																																																							

나. 부칙 제2조(한시정원) 일반직 정원 중 5급 1명의 한시정원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2016. 8. 4 ~ 8. 1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에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을

2018. 6. 30.까지 연장함에 따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추진단 5급 1명의 한시정원도 2018. 6. 30.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별 기준인건비 내에서 동 조례 “안 별표 3“의 5급 정원을 59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 계를 1,311명에서 1,310명으로 감원하고자 동(同) 조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는 연면적 20,229㎡ 【도서관(7,385㎡), 청소년교육센터(4,952㎡), 근린생활시설(4,087㎡), 공영주차장(4,087㎡)이며,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사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 전국 25개 주요 시·군·구 중앙도서관 규모에 따른 도서관장의 직위를 보면 행정5급/18명, 사서5급/1명, 사서6급/6명으로 주로 행정5급이 도서관장을 맡고 있으며, 마포 중앙도서관은 7,385㎡로 마포구립 서강도서관(6급 관장) 1,146㎡보다는 훨씬 크고 전국 25개 주요지역 시·군·구 중앙도서관 평균 연면적 5,334㎡ 보다도 큰 규모로 도서관 외에 청소년교육센터, 공영주차장 및 임대상가 등 전체 시설물 관리(3개 팀, 45명 정도)에 필요한 도서관장 및 시설장을 겸임하려면 5급 상당 직위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줄이는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예산을 검토한 바, 2016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통보액은 1,107억 8,859만 9천원이고 마포구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1,037억 3,195만 5천원으로 별도의 예산 증액 없이 마포구 기준인건비 편성액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에서 2017. 8. 15.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가 건축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준공 후 시설물 관리와 향후 조직 운영에 필요한 도서관장 겸임 시설장 선임을 위한 5급으로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되나, 다만 도서관장이 시설장까지 겸임하는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도서관장이 시설관리 업무까지 겸임해도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자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 도서관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0호, 2016.2.3., 일부개정]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 고 자 료

## ■ 서울 공공도서관 관장 직급 현황(106개소)

구분	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이하	비고
인원(명)	106	12	21	25	48	사서자격자 : 71명
비율(%)	100	11	20	24	45	(67%)

## ■ 채용 직위 검토

-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사서직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함
- 서울시 공공 공립도서관 관장 106명 중 67%인 71명이 사서자격 보유자로, 31%인 33명이 5급 이상, 24%인 25명이 6급, 45%인 48명이 7급이하 관리자 를 관장으로 두고 있음 (출처 :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
- 서울도서관장은 1급 정사서 자격보유자를 임기제 4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우리구 서강도서관장은 위탁체에서 일반직공무원 6급 기준으로 채용하였음
- 전국 25개 주요 시·군·구 중앙도서관 규모에 따른 도서관장의 직위를 살펴보면 행정5급/18명, 사서5급/1명, 사서6급/6명으로 주로 행정5급이 도서관장을 맡고 있음
- 다만, 도서관장이 시설장까지 겸임하는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도서관 업무는 도서관장이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장이 맡아야 업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전국 25개 구,시,군 중앙도서관 현황(도서관장, 연면적 비교)									
연번	지역 시군구	설립주체	운영방식	개관년도	도서관명	부지면적	시설 연면적	도서관장 직급	직원 정규직 정원
1	광명시	지자체	직영	2004	광명시중앙도서관	5,027.00	9,965.63	행정 5급	21
2	군포시	지자체	직영	2008	군포시 중앙도서관	10,730.00	12,268.00	행정5급	20
3	성남시 분당구	지자체	직영	2001	성남시중앙도서관	58,586.00	13,018.00	행정5급	11
4	시흥시	지자체	직영	2002	시흥시중앙도서관	5,103.00	3,904.00	행정5급	14
5	안산시 단원구	지자체	직영	2006	안산시중앙도서관	11,334.00	6,668.00	행정5급	24
6	안성시	지자체	직영	2008	안성시립중앙도서관	17,000.00	6,249.00	행정5급	14
7	양평군	지자체	직영	1993	양평군립중앙도서관	5,236.00	1,936.00	행정5급	9
8	연천군	지자체	직영	2007	연천군 중앙도서관	3,306.00	2,094.50	행정 6급	5
9	오산시	지자체	직영	2008	오산시 중앙도서관	2,910.10	6,421.36	행정5급	16
10	용인시 처인구	지자체	직영	1993	용인중앙도서관	8,643.00	4,388.00	행정5급	21
11	의왕시	지자체	직영	2007	의왕시중앙도서관	7,529.00	7,267.00	행정5급	16
12	파주시	지자체	직영	2005	파주시중앙도서관	2,030.00	6,516.00	사서5급	20
13	포천시	지자체	직영	2012	포천시립중앙도서관	6,815.00	4,919.00	행정5급	9
14	구미시	지자체	직영	1994	구미시립중앙도서관	6,783.40	8,395.37	지방행정사무관	20
15	문경시	지자체	직영	1997	문경시립중앙도서관	4,000.00	2,526.00	사서6급	3
16	포항시 북구	지자체	직영	2007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6,815.00	9,812.00	행정5급	15

연번	지역 시군구	설립주체	운영방식	개관년도	도서관명	부지면적	시설 면적	도서관장 직급	직원 정규직 정원
17	북구	지자체	직영	2008	울산북구중앙도서관	992.00	2,447.00	행정6급	6
18	고흥군	지자체	직영	2010	고흥군립중앙도서관	2,351.00	1,338.86	행정5급	4
19	광양시	지자체	직영	1992	광양시립중앙도서관	10,788.00	3,734.12	사서6급	12
20	장성군	지자체	직영	2005	장성군립중앙도서관	57,918.00	2,925.20	행정5급	5
21	완주군	지자체	직영	2012	완주군립중앙도서관	54,118.00	2,410.00	사서6급	8
22	정읍시	지자체	직영	1990	정읍시립중앙도서관	7,119.00	3,503.00	사서6급	8
23	서귀포시	지자체	직영	1994	서귀포시중앙도서관	20,882.00	3,394.00	지방사서6급	8
24	태안군	지자체	직영	2013	태안군립중앙도서관	3,946.00	2,773.00	행정5급	6
25	당진시	지자체	직영	2009	당진시립중앙도서관	12,931.00	4,485.00	행정 5급	8